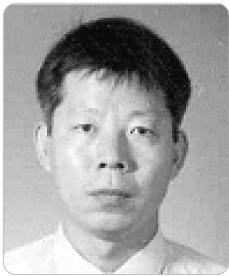


» 알기 쉬운 무허가 축사 개선세부실시요령

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 필요



안 규 정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서기관

1. 추진배경

1) 축산업의 규모화 및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. 2011년 9월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17,720호 중 무허가 축사는 7,925호로, 44.8%를 차지하고 있다. 무허가 축사는 주로 분뇨유출 방지 등을 위한 축사 간 지붕 연결 등으로 건폐율(최대 60%)이 초과되거나,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사가 존재하는 등의 요인이 많다. 다만,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당초 축사시설의 건폐율 20~40%를 60%까지 확대했고,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(가축사육 거리제한)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해당된다.

2) 환경부에서 분뇨관리의 사각지대, 타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.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축사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,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반영하고 있다. 이로 인해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, 가축분뇨법 테두리를 벗어난 건축법상 무허가 축사 문제로 쟁점 확대되고 있고, 현실적으로 건폐율 초과 등 무허가 축사 요인 적법화 하기 어려워, 개정안 발효 시 축사폐쇄 등으로 인해 축산업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.

3)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도 실행하면서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축산 현실과 괴리된 제도개선 등의 선결이 필요하다. 또 축종 또는 무허가 유형에 맞는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준 재설정

등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하고,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지 실태조사, 생산자 및 전문가 등 환류(feedback) 과정을 거쳐 최적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.

2. 추진경과

1) 범부처(농식품부, 환경부, 국토부)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발표(13.2.18)

- (1) 총리실 주관, 무허가 축사 개선 관련 관계 부처 회의(13.2.4)
- (2) 부처 합동 현지 실태조사(12.9.14, 9.27, 10.15~16)
- (3) 농축식품부, 국토부, 환경부 부처합동 실무협의(12.7.27~11.2)

2)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(13.5.31)

(1) 가설건축물 적용 재질확대 : 비닐하우스, 천막구조 → 합성수지 포함

3) 축사지붕 합성강판 허용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(15.4.27)

4) 이행강제금 완화 관련 건축법 일부 개정(15.8.11, 16.2.12)

- (1)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
- (2) 건폐율초과, 용적율 초과, 무허가, 미신고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17.5~25%까지 경감

5)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(14.3.24, 시행 15.3.25)

(1)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,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

6) 가축분뇨법 시행령(15.3.24) 및 시행규칙(15.3.25) 일부 개정

(1) 육계 및 오리 사육농가 배출시설 설치의무 면제 및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대상 조정 등

7) 무허가축사 위탁사육 금지 관련 가축분뇨법 개정(15.12.1)

(1) 무허가 축사에 사육을 위탁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양성화 기간(3~4년)까지 유예

3. 주요 개선내용

1)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

- (1) 현행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 건폐율을 60%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조례로 제정 및 운영
- (2)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 미 제정 또는 하향 설정(20~50%)하여 운영함으로써 무허가 축사

표 1. 건폐율 운영현황 조사결과

(16. 6월 기준, 단위 : 개소, %)

구분	광역시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합계
미제정	1	9	-	-	-	-	-	-	-	10(8.1)
20%	1	-	-	-	-	-	1	-	-	2(1.2)
30%	-	-	-	-	-	-	-	-	-	-(-)
40%	-	-	-	-	-	-	-	-	-	-(-)
50%	4	2	-	-	1	2	1	-	2	12(7.5)
60%	3	17	18	10	14	12	20	23	16	138(83.1)
계	9	31	18	10	15	14	22	23	18	162(100)

* 광역시에는 7개 광역시 제외, 세종시 및 제주도 포함

개선 시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

162개 시·군 중 60%는 104개소(64%), 20~50%는 47개소(29%), 미제정은 11개소(7%)

(3) 축산규모가 큰 시·군에 대하여는 조례 제·개정을 통해 건폐율을 확대함으로써 일부 무허가 축사 개선, 건폐율 운영현황 조사결과(16.6월 기준) 138개(83.1%) 지자체에서 건폐율 60%로 확대 개선

2)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

(1) (현행)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에 한해 허용

※ 건축법 시행령 제15조(가설건축물)제5항 제10호 : 연면적이 100m² 이상인 간이축사용, 가축운동용,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

(2) 운동장 또는 축사 등의 지붕으로 합성수지 재질을 많이 사용하나,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축사면적 과다 적용

※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아 건폐율 상향 조정 효과가 있고,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자돈용 컨테이너도 가설건축물에서 제외

(3) (대책) 축사용 가설건축물 벽과 지붕은 합성수지 재질(일명 썬라이트)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- 운동장 또는 축사 등의 벽과 지붕으로 합성수지 사용 또는 지붕에 합성강판 1/2 이하 사용 시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고, 3년마다 존치기간 연장(가축분뇨가 적정 처리될 경우 환경부서 확인 후 연장)
- 가축분뇨처리시설, 가축양육실 및 가축운동

장을 가설건축물에서 제외

(개선) 가설건축물에 합성수지(합성강판 1/2 이하) 사용,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가축양육실, 가축운동장을 가설건축물(연면적 100m² 이상)에 포함 -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10호, 제11호(13.5.31, 15.4.27 개정)

3)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

(1) (현행) 육계·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용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

- 흙바닥에 수분조절재(왕겨 등)를 도포하여 사용하고, 가축분은 일괄 위탁처리하고 있음
- 대부분 육계·오리의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미신고로 무허가축사 유지

(2) (대책) 육계·오리의 경우 바닥에 비닐을 깔고 재 입식 시 분뇨를 처리한 후, 왕겨 등 일정 두께 이상 도포 시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

- 바닥면부터 30cm²이상 아래 비닐 등 방수재를 깔고, 바닥면부터 10cm² 이상의 두께로 왕겨 또는 톱밥 등 깔 것

(개선) 육계·오리 축사에 대해 아래사항 모두 준수 시 처리시설 설치 의무 면제 <가축분뇨법 시행령 제9조제4호('15.3.24 개정)>

- ① 배출시설의 지하에 분뇨 및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바닥면부터 30cm 이상 아래에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 것
- ② 배출시설의 바닥면부터 10cm 이상의 두께로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고르게 깔 것
- ③ 닭·오리를 출하할 때마다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것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

생활악취 또는 질병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수 있음

4) 축사거리제한 재설정

- (1) (현행)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·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(닭·오리 500m)으로 인해 인허가 불가
- (2)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가 축사거리제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근본적으로 차단
- (3) (대책) 환경부·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또는 권고안 개정을 통해 재설정

축조 신고가 근본적으로 차단

- (3) (대책) 가축분뇨법 개정 시 ‘축사거리제한’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적법화 가능
 - 시·군별 조례 제정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대하여 축사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칙에 유예기간 설정

(개선) 법 시행일로부터 3년('15.3.25~'18.3.24)이내 가축사육 제한구역내라도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가능(가축분뇨법 부칙 8조, 제12516호) - 『무허가·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』를 제출하여 증명 필요 (환경부 고시 제2014-125호)

5)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

- (1) (현행)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·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해 인허가 불가
 - 축사거리제한을 받는 개별농가에게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
- (2)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가 축사거리제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 또는 가설건축물

6) 대책 이외 제도개선

- (1) (위탁사육 금지) 무허가 축사에 가축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업체 처벌 유예 (「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」발의)

불법 축사에 가축 위탁사육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적용을 3~4년간 유예(15.12.1)

표 2. (개선)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·개정 권고안 통보('15.3.31, 환경부)

구분	기존 권고안 (환경부, '11.10.14)	금번 권고안 (환경부, '15.3.31)		비고
닭·오리	500m	2만 수 미만	250m	- 동 권고안은 신규 입지하는 시설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기존 시설의 증·개축을 관리하기 위함 - 악취로 인근 주민에 영향을 미치는 축사는 거리제한을 두되,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할 경우 축사 신축 및 증·개축 시 거리제한 완화
		2~5만 수	450m	
		5만 수 이상	650m	

(2) (방역시설 건폐율) 정부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가축방역시설 (소독시설)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 (FTA 여야정 합의사항)

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 (15.4.27일 이전)에 설치한 시설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제외

(3) (이행강제금) 불법 건축물(축사)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 규정(FTA 여야정 합의사항,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, 발의)

위반내용에 따라 적정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(건축법 제80조, 축사 등 농업용 시설 (500㎡ 이하)의 경우 1/5감경, 그 외 위반동기, 범위, 시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/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감경 (건축법 제80조의2 개정, '15.8.11, '16.2.12) -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행강제금 감경(현 50% → 25% 이내)

(4) (축사차양, 지붕연결, 배출시설) 무허가 축사에 처마(비가림 시설), 축사간 지붕연결 부위,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면적 제외

축사 차양 3m까지 (기 반영), 축사간 연결부위 상부 폭 6m 이내에서 건축면적 제외 (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), 가축분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('13.2.20일 이전)에 대해 건축면적 제외 (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)

7) 향후 추진계획

(1) 기본원칙

先,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→ 後, 무허가 축사 개선

- 축산 현실에 맞게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
- 개별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서류 및 인·허가 절차 등 세부실시요령 마련 및 순회설명회 등 홍보 강화

(2) 단계별 실행계획

가)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마련 : 15.11.11(기 조치)

나)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 및 홍보

-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교육 및 홍보(연중)
- 가축분뇨법(무허가 축사에 위탁사육 시 처벌 유예) 개정 : 15.12월
- 건축법 시행령(축사 지붕연결 등, 이행강제금 경감) 개정 : 15.12월

다) 무허가 축사 적법화

-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인·허가 : 15.11월~18.3월

라) 무허가 축사 사후관리

- 무허가 축사 등 축산시설 실태조사 : 16.5~8월
- 무허가 축사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: 18년~